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07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711호 2012. 9. 21.(금)

【조 례】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68호(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및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1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69호(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70호(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71호(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693호(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2

회							
람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및 아동 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제고로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연수구를 조성하고, ○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연수구 조례에서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및 서식을 간소화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및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셋째아 이후 출생아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로 함 ○ 시비 보조사업인 출산축하금(또는 출산장려금)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지원내용, 방법 및 절차는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함 ○ 지원대상자로서 입양아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함(제2조) ○ 신청일을 ‘출생일 기준 3월 이내 신청’에서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3월 이내 신청’으로 출산장려금 신청기산점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신청기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민원인 편의를 증진함(제6조) ○ 제출서류 중 ‘각서’ 제출을 생략하는 대신 공부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하여 서류제출 간소화(제7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및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9. 21.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68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및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및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셋째아 이후 출생아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에 거주하는 셋째아 이후 출생아 양육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셋째아 이후 출생아”란 한 가정에 태어난 셋째부터의 출생아를 말하며, 입양아를 포함한다. 재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자녀를 포함한 셋째아 이후 출생아를 말한다.
2. “입양아”란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양아동 중 「영유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3. “셋째아 이후 아동양육비(이하 “아동양육비”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후 출생아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구에서 지원하는 비용의 일부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후 출생아의 친권자, 후견인 등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신청인”이란 친권자 등 아동양육비 지원신청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신청인의 범위) ① 아동양육비 신청인은 셋째아 이후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친권자 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를 말하며 수임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기한 이전에 친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구 관내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고 주거를 같이 하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친권자를 대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5년 이내에서 정한다.

② 셋째 이후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안내) 구청장 및 동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3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수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위임장 및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신고사항 및 친권자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일자 및 가족사항
3.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4.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와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대장 사본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아동양육비를 매월 15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확보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양육비를 입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양육비를 환수한 때에는 아동양육비 지원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9조(지원중단) ① 지원대상자의 전출·사망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을 중단하되, 중단사유 발생월 기준 1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

② 국가나 인천광역시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성격의 아동양육비 지원 정책 등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양육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대장 등 비치) 동장과 구청장은 아동양육비 신청(지원)대장 (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셋째아 이후 출생아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친권자	부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출생아	성명		주민등록번호	
	친권자와 관계			
	출생순위(단태아)		출생일	년 월 일
	출생순위(다태아)		자녀 중 제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연락처	자택		H.P	이메일
신청내역			아동양육비 () 회차/ 회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인천광역시연수구 셋째아 이후 출생아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 제3조 내지 제6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양육비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주 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친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친 권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사항	친 권 자 주 소 :			
	관내 전입 일자 :	년	월	일
	출 생 아 성 명 :			
	출생아생년월일 :	년	월	일
	출생아출생순위 :	째		
공부담당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의견				

【별지 제2호 서식】

아동양육비 지원신청 위임장

위임자 (영유아의 부 또는 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수임자 (출산장려금 수령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아동의 부 또는 모)는 셋째아 이후 아동양육비 신청을 영유아를 대리양육하고 있는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 (서명 또는 인) 본인 확인 연락처 :				
※ 확인자료 : 위임자(아동의 부 또는 모)와 수임자(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셋째아 이후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아동양육비 신청(지원)대장

[illegible]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에 따른 주민의 부담과 구(區)의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여, 종량제 정착 및 발생량 감소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 조례의 조문 중 일부를 현행 상위법과 일치시켜 조례 해석 시 야기될 수 있는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다량배출사업장 대상면적을 현행 상위법에 일치(제2조) - 다량배출사업장의 대상면적을 “100㎡” 에서 “200㎡” 로 변경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주민 지원범위 세분화(제8조)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기기 지원 및 표창 수여에 관한 사항 추가 ○ 전용수거용기 가격 산정기준 조항 신설(제11조)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가격 산정기준을 규정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9. 21.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69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가목 및 같은 조 같은 호 나목 중 “100㎡”를 “200㎡”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을 “홍보물의 제작·배포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기기·시설 설치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설설치 지원금,”을 “시설설치 지원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기기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중 “우수 표지판 등을 교부할 수 있다.”를 “우수 표지판을 교부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종류·재질”을 “종류·재질·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가격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7조 제2항 별표 4에 따르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 규정 및 제11조 제5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전용수거용기 주민 판매 가격 산정기준 (제11조제5항 관련)

①	②	③
주민 판매 가격 = 【 전용수거용기 조달단가 + 운송비 + 판매수수료 】		
※ 십원 단위는 반올림함.		

【주】

- ① 전용수거용기 조달단가 : 조달청에 등록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매 단가
 - ② 운송비 : 전용수거용기 운송에 따른 부대비용
 - ③ 판매수수료 : (전용수거용기 조달단가 + 운송비) × 0.05
- ※ 원 단위는 절사함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 평생교육 관련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평생교육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강료의 징수, 감면, 반환 및 프로그램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주요 내용 ○ 평생교육협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가능한 대상을 명확히 함(제7조) ○ 평생교육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구의원 및 기관·단체의 장으로서 평생교육협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위원의 임기를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규정함.(제8조)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제16조2부터 제16조의5) - 수강료 징수·감면·반환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대한 사항 규정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9. 21.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70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평생교육 담당 국장
2.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동부교육지원청 소속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3.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4.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 구의원 및 기관·단체의 장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수강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의견 들어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6조의3(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4.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제16조의4(수강료 반환) ①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모집정원의 3분의 1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구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 신청인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의5(운영시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제16조의2제2항 관련)

운영과정	수강료 (프로그램당)	비고
13주 이상	100,000원 이하	○ 주1회 2시간 기준 ○ 주1회 2시간 초과 또는 미만 프로그램은 기준액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12주 이하 ~ 9주 이상	60,000원 이하	
8주 이하	40,000원 이하	

[별표 2]

수강료 반환 기준(제16조의4제1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1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16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수업 시작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비 고	총 수업시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개정 이유 ○ 기존 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제15조의2) -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9. 21.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71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내용 중 “중소유통의”를 “중소유통업의”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의2제1호 중 “영업시간 제한”을 “영업시간”으로 하고, “까지 한다.”를 “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의2제2호 중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를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휴업일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1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조례 해석시 야기될 수 있는 혼돈을 방지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단서 삭제) 반영 등
 - 조례 제2조제1호 중 “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로 개정하고, “직무” 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각 목으로 구분하여 개정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반영
 - 조례 제5조제1항 중 “폐질등급” 을 “장애등급” 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1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032-810-7051, FAX 032-810-7079, www.yeonsu.go.kr】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사항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의회의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 나.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최된 위원회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 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
2. “의정활동비”란 영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회 중에 개최된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에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의회의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최된 위원회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 2. “의정활동비”란 영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u>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u> ② (생략)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u>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u> ② (현행과 같음)